

#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3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  
발 의 자: 김춘곤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은림, 이종배, 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8명)

### 1. 제안이유

- 「한의약 육성법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“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”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함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수립한 서울시 한의학 육성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함. (안 제6조제2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한의약 육성법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6조(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<p>② (생 략)</p>	<p>제6조(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